

#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해설)

(노동부 고시 제 96-36호)

홍 중 민 / 우리 협회 전문위원  
건설안전기술사

## 1. 개정이유

건설재해예방을 위하여 계상되고 있는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내역을 확대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 대상 조정 및 적정 수수료 산정으로 실질적인 재해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2. 개정내용

개 정 전	개 정 후
제 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26조의 3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동법시행령(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5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2조 내지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에 의한 개정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안전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라 함은 “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안전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라 함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

개 정 전	개 정 후
<p>준칙”(재무부 회계예규) 별표 2의 공무원가 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p> <p>3. “<u>전담기술지도</u>”라 함은 영 제26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외의 사업의 사업주에게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이 안전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기술지도를 전담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p> <p>4. “<u>정기기술지도</u>”라 함은 영 제26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직 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외(공사금액이 20억원이상 100억원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의 사업주에게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이 안전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p> <p>② 기타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영·규칙·예산회계법령 및 건설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칙”(재무부 회계예규) 별표 2의 공무원가 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p> <p>3. 일반기술지도라 함은 규칙 제32조의 제3항의 건설공사 중 공사금액이 20억원미만인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에게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이 안전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p> <p>4. 전문기술지도 함은 규칙 제32조 제3항의 건설공사 중 공사금액이 20억원이상 100억원미만인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에게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이 안전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p> <p>② 기타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영·규칙·예산회계법령 및 건설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 전담기술지도를 일반기술지도로, 정기기술지도는</p>	<p>전문기술지도로 용어가 변경되었으며 영 및 규칙 조항이 개정되어 이에 따라 개정되었음</p>
<p>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u>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한다.</u></p> <p>제4조(건설공사의 분류) 이 고시에서 정하는 건설공사의 분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요율표상의 건설업 사업 종류 예시에 의한다. 다만, 별표 1에서 규정한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는 건설관계 법령 등에 의한다.</p>	<p>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한다.</p> <p>제4조(삭제)</p>
<p>※ 제3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으로 제4조가</p>	<p>제5조로 변경 제4조는 제5조 제2항으로 변경, 개정됨</p>

개 정 전	개 정 후
<p>제5조(계상기준) ①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 및 건설업을 행하는 자(발주자와 건설업을 행하는 자가 같은 경우로서 이하 “자기공사자”라 한다)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호와 같이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상액이 5억원미만 또는 50억원이상일 때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li> <li>2. 대상액이 5억원이상 50억원미만일 때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X)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C)을 합한 금액</li> </ol> <p>②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p> <p>③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는 건설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별표 2의 사용내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은 적절한 방법으로 공사설계내역서에 계상하여야 한다.</p>	<p>제5조(계상기준) ①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 및 건설업을 행하는 자(발주자와 건설업을 행하는 자가 같은 경우로서 이하 “자기공사자”라 한다)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호와 같이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상액이 5억원미만 또는 50억원이상일 때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X)을 곱한 금액</li> <li>2. 대상액이 5억원이상 50억원미만일 때에는 대상액에 별표1에서 정한 비율(X)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C)을 합한 금액</li> </ol> <p>② 별표 1의 건설공사의 종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해 고시된 산재보험요율표상의 건설업 사업종류 예시표에 의한다. 다만, 별표 1에서 규정한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는 건설관계법령 등에 의한다.</p> <p>③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p> <p>④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는 건설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별표 2의 사용내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은 적절한 방법으로 공사설계내역서에 계상하여야 한다.</p>
<p>※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등은 종전과 변함이 없으며, 다만 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변경하고 동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삭제된 제4조를 제2항에 포함하였음</p>	
<p>제6조(계상시등) ①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p> <p>②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건설공사는 도급계약상의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p>	<p>제6조(계상시등) ①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p> <p>②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건설공사는 도급계약상의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p>

개 정 전	개 정 후
<p>상하여야 한다.</p> <p>제7조(수급인의 의무등)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된 안전관리비에 당해 건설공사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계약 등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낙찰률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비율을 낙찰률로 본다.</p> <p>② 발주자 및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공사도급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p> <p>③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공사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할 때에는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범위안에서 하수급인에게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하거나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 책임하에 하수급인과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8조(사용기준)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p> <p>②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3의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상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자(감리자를 포함한다) 또는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9조(목적외 사용방지) 발주자는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는 사항을 계약특수조건으로 명시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안전관리비의 목적외 사용을 방지하여야 한다.</p> <p>제10조(확인) ① 발주자 및 노동부 관계공무원은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의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다.</p> <p>②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도중 또는 종료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p>	<p>상하여야 한다.</p> <p>제7조(수급인의 의무등)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된 안전관리비에 당해 건설공사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계약 등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낙찰률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비율을 낙찰률로 본다.</p> <p>② 발주자 및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공사도급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p> <p>③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공사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할 때에는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범위안에서 하수급인에게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하거나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 책임하에 하수급인과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8조(사용기준)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p> <p>②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3의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상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자(감리자를 포함한다) 또는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9조(목적외 사용방지) 발주자는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는 사항을 계약특수조건으로 명시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안전관리비의 목적외 사용을 방지하여야 한다.</p> <p>제10조(확인) ① 발주자 및 노동부 관계공무원은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의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다.</p> <p>②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도중 또는 종료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p>

개 정 전	개 정 후
<p>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하도급관계에서도 이를 준용한다.</p> <p>제 11 조(안전관리비 실행예산의 작성 및 집행) ① 사업주는 공사실행 예산을 작성할 때에 제 7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에 사용하여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을 당해 공사현장내에 비치하여야 한다.</p> <p>② 사업주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 실행예산의 작성·집행시 법 제 15 조 및 영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자가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p> <p>※ 제 6 조(계상시기 등) ~ 제 11 조(안전관리비 실행예산의 작성 및 집행)까지는 개정된 사항이 없으며 종전과 동일함</p> <p>※ 제 3 장 재해예방기술지도 등 제 2 조(정의)에 의한 용어의 변경 및 신설조항 등의 개정이 많으므로 참고 바람</p>	<p>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하도급관계에서도 이를 준용한다.</p> <p>제 11 조(안전관리비 실행예산의 작성 및 집행) ① 사업주는 공사실행예산을 작성할 때에 제 7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에 사용하여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을 당해 공사현장내에 비치하여야 한다.</p> <p>② 사업주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 실행예산의 작성·집행시 법 제 15 조 및 영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자가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p>
<p>제 11 조의 2(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분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기술지도 분야를 순수건설공사와 전기·전기통신공사로 명확히 구분하여 기술지도를 시행하는 데 목적이 있음</p>	<p>제 11 조의 2(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분야) 규칙 제 32 조의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분야는 건설공사의 종류에 따라 순수건설공사 &lt;제 3 조의 적용을 받는 모든 건설공사 중 전기 및 전기통신공사를 제외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gt; 지도분야와 전기 및 전기통신공사 지도분야로 구분한다.</p>
<p>제 12 조(기술지도) ① 전담기술지도는 월 1 회 이상, 정기기술지도는 매 3 월에 1 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당해 공사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술지도 또는 정기기술지도를 실시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제 13 조 제 4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사금액이 4,000 만원미만인 건설공사</li> <li>2. 공사기간이 3 월미만인 건설공사</li> </ol>	<p>제 12 조(기술지도) ① 일반기술지도 또는 전문기술지도는 별표 4 에서 정한 회수 이상 실시하되 전문기술지도의 경우에는 기술사가 매 3 회에 1 회 이상 방문지도를 하여야 한다.</p> <p>② 규칙 제 32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일반기술지도 또는 전문기술지도를 실시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제 13 조 제 3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개 정 전	개 정 후
<p>3. 전국 도·시·지방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제주도 및 연육교가 설치된 지역 제외)</p> <p>4. 기타 노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건설공사 (건설업자인 사업주가 공사계약시 고시내용을 제시함)</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술지도 또는 정기 기술지도는 공사종류에 따라 순수건설공사(전기 및 전기통신공사 제외), 전기·전기통신공사로 구분한다.</p>	<p>1. 건설업법에 의한 수중공사로서 공사금액이 4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수중공사를 제외한 순수건설공사로서 공사금액이 3억원미만인 건설공사 또는 전기 및 전기통신공사로서 공사금액이 1억원미만인 건설공사</p> <p>2. 공사기간이 3월미만인 건설공사</p> <p>3. 전국 도·시·지방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제주도 및 연육교가 설치된 지역 제외)</p> <p>4. 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제출심사 및 확인을 받아야 할 건설공사</p> <p>5. 기타 노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건설공사 (건설업자인 사업주가 공사계약시 고시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p>
<p>※ 제12조(기술지도)는 기술지도 회수를 조정하여 일반 및 전문기술지도로 구분하였으며 기술사가 1회 이상 방문지도하는 사업장을 전문기술지도로 개정하였으며 기술지도 대상공사는 수중공사를 제외한 순수건설공사는 공사비 3억(관급, 지급자재대 포함)이상, 전기·전기통신공사는 공사비 1억원이상 공사를 기술지도 대상으로 하고 법 제48조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현장도 기술지도 대상에서 제외된다.</p>	
<p>제 13 조(기술지도 계약) ①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14일 이내에 <u>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에 관한 계약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종료시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지도완료 증명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②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자기공사자는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에 관한 계약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체결하고 그 증빙서류를 공사 현장내 적절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p> <p>③ <u>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전담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u></p>	<p>제 13 조(기술지도 계약) ①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수급인은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에 관한 계약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종료시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자기공사자는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에 관한 계약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체결하고 그 증빙서류를 공사현장내 적절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p> <p>③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수급인에 대하여는 제5조의</p>

개 정 전	개 정 후
<p>관리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정기술지도도를 받아야 한다.</p> <p>④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수급인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안전관리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담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는 안전관리비의 40퍼센트</li> <li>2. 정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는 안전관리비의 30퍼센트</li> </ol> <p>⑤ 제4항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계약 특수 조건에 명기하여야 한다.</p> <p>※ 제13조(기술지도 계약)의 개정은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14일 이내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어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므로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로 개정하였다. 그러므로 개정전보다 약 7일 정도의 여유가 있다고 보면 된다. 공사계약 체결 후 보편적으로 7일 이내 착공계를 제출하므로 공사계약 후 14일이 약 21일로 연장되는 셈이 된다. 또한 제3항의 삭제는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일반 또는 전문기술지도는 안전관리자의 선임에 관계없이 기술지도를 하고 기술지도비 또한 기술지도의 분류에 의한 산출에서 공사비에 따른 일정율로 계산되므로 삭제된 것임</p>	<p>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안전관리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일반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는 안전관리비의 40퍼센트</li> <li>2. 전문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는 안전관리비의 30퍼센트</li> </ol> <p>④ 제3항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계약 특수 조건에 명기하여야 한다.</p>
<p>제 14 조(기술지도의 범위 및 준수 의무) ① 건설재해 예방전문기관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도 를 함에 있어서는 해당 사업주에게 안전관리비 집행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개선을 권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 권고시에는 법, 영, 규칙,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법 제27조의 기술상의 지침 및 영 제26 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 하는 건설공사 표준안전시방서를 고려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u>전담기술지도 또는 정기술지도</u>를 받은 사업주는 개선 권고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p> <p>④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도의 권고사항을 2회이상</p>	<p>제 14 조(기술지도의 범위 및 준수 의무) ① 건설재해 예방전문기관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도 를 함에 있어서는 해당 사업주에게 안전관리비 집행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개선을 권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 권고시에는 법, 영, 규칙,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법 제27조의 기술상의 지침 및 영 제26 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 하는 건설공사 표준안전시방서를 고려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기술지도 또는 전문 기술지도를 받은 사업주는 개선 권고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p> <p>④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도의 권고사항을 2회이상</p>

개 정 전	개 정 후
<p>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관할지방 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자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관할지방노동관서장은 당해 사업장의 범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p> <p>제 15조(수수료)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술지도 또는 정기기술지도에 대한 수수료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기초로 하되 별표 4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p>	<p>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관할지방 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자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관할지방노동관서장은 당해 사업장의 범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p> <p>제 15조(수수료)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기술지도 또는 전문기술지도에 대한 수수료는 안전관리비 총액에 별표 4의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p>
<p>※ 제 14조(기술지도의 범위 및 준수 의무) 제3항은 개정된 용어로 전담·정기기술지도가 일반·전문기술지도로 변경되었으며 기타 사항은 개정되지 않았음</p> <p>제 15조(수수료)는 공사비별로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개정되었음</p>	<p>※ 제 14조(기술지도의 범위 및 준수 의무) 제3항은 개정된 용어로 전담·정기기술지도가 일반·전문기술지도로 변경되었으며 기타 사항은 개정되지 않았음</p> <p>제 15조(수수료)는 공사비별로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개정되었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은 1995년 3월 1일이후 계약된 공사에 한하여 시행한다.</p> <p>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 노동부고시 제1994-45호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계상된 안전관리비에 대하여는 그에 의한다.</p>	<p>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p> <p>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고시 (1995-6호)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는 당해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 종전고시에 의한다.</p>
<p>※ 개정된 부칙에서 안전관리자 및 건설업 종사자들이 특히 유의할 사항으로 종전에 고시된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에 의한 장기계속공사 등도 금반 개정된 고시에 의하여 안전관리비의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개정된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p>	<p>※ 개정된 부칙에서 안전관리자 및 건설업 종사자들이 특히 유의할 사항으로 종전에 고시된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에 의한 장기계속공사 등도 금반 개정된 고시에 의하여 안전관리비의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개정된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p>



(별표 1) 건설공사 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 (별표 1)은 개정되지 않고 종전 고시와 동일함

공사금액	대상액	5억원이상		50억원이상
		5억원미만	50억원미만	
		비율(X)	기초액(C)	
일반건설공사(갑)	2.48(%)	1.81(%)	3,294천원	1.88(%)
일반건설공사(을)	2.66(%)	1.95(%)	3,498천원	2.02(%)
중건설공사	3.18(%)	2.15(%)	5,148천원	2.26(%)
철도·궤도신설공사	2.33(%)	1.49(%)	4,211천원	1.58(%)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1.24(%)	0.91(%)	1,647천원	0.94(%)

- 주 : 1.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 준설공사, 조경공사, 택지조성공사(경지정리공사 포함), 포장공사, 전기공사, 전기통신공사
2. 별표 1에서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로 분류된 준설공사, 조경공사, 택지조성공사(경지정리공사 포함), 포장공사, 전기공사, 전기통신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사업종류별 예시표에 의한 일반건설공사(갑)에서 제외시키고 이 고시에서 정한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비율로 계상하되 일반건설공사(을)·중건설공사·철도·궤도신설공사의 적용을 받는 공사는 해당 공사종류에 따른 비율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3.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는 단독발주에 한하여 별표 1의 안전관리비율을 적용한다.

(별표 2)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기준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구분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항목수를 많이 삽입하였으며 사용기준의 합계가 150%에서 210%로 증가시켜 적용범위를 넓게 하였다는데 뜻이 있다 하겠다. 종전고시(중·주)란을 사용내역에 포함시켜 적용에 명확성을 증가시켰다고도 볼 수 있다.

※ 아래 표의 '개정전 항목'은 '개정후 항목'과 동일함

개정 전			개정 후	
항목	사용내역	사용기준	사용내역	사용기준
1. 안전보건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보건 관계자의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관리자</li> <li>- 건설용 리프트의 운전자</li> <li>- 크레인·리프트·콘도라·승강기 등 양중기 및 차량계 건설기계의 유도 또는 신호자</li> </ul> </li> <li>○ 안전담당자의 업무수당(월 기본급의 10%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용 리프트·콘도라를 이</li> </ul> </li> </ul>	안전관리비 총액의 4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보건 관계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행 출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담·겸직 안전관리자</li> <li>- 하도급업체의 안전관리자</li> <li>- 공사금액 20억원미만 공사에서 선임된 유자격 안전관리자</li> </ul> </li> <li>○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용 리프트의 운전자</li> <li>- 고정식 크레인·리프트·콘도라·승강기 등 양중기의 유도 또는 신호자</li> </ul> </li> </ul>	안전관리비 총액의 40% 이하

개 정 전			개 정 후		
항 목	사 용 내 역	사용기준	사 용 내 역	사용기준	
1. 안전 보건 관 계 자의 인건비 및 각조 업무수 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용한 작업</li> <li>-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작업(2미터이상 인 구축물 파쇄에 한함)</li> <li>- 굴착깊이가 2미터이상인 지반의 굴착작업</li> <li>-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동바리 설치 또는 해체작업</li> <li>- 터널안에서 굴착작업, 터널거푸집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li> <li>- 굴착면의 깊이가 2미터이상인 암석굴착</li> <li>-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li> <li>- 비계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li> <li>- 건축물의 골조, 교량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5미터이상에 한함)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 작업</li> <li>- 콘크리트 공작물(높이가 2미터 이상에 한함)에 해체 또는 파괴작업</li> <li>-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li> <li>- 맨홀작업, 산소결핍장소에서 작업</li> <li>- 기타 시행령 제11조제1항 별표 2의 안전담당자 지정작업</li> </ul> <p>○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p>	안전 관리비 총액의 4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덤프트럭·이동식크레인·콘크리트펌프카등 건설기계의 유도 또는 신호자</li> <li>- 비계해체시 하부통제를 위한 신호자</li> <li>- 기타 공사장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자</li> <li>※ 차량의 원활한 흐름 또는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정리·신호수의 인건비는 제외</li> </ul> <p>○ 안전담당자의 업무수당(월 급여액의 10% 이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용 리프트·곤도라를 이용한 작업</li> <li>-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작업(2미터이상인 구축물 파쇄에 한함)</li> <li>- 굴착깊이가 2미터이상인 지반의 굴착작업</li> <li>-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동바리 설치 또는 해체 작업</li> <li>- 터널안에서의 굴착작업, 터널거푸집의 조립</li> <li>- 굴착면의 깊이가 2미터이상인 암석굴착 작업</li> <li>-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 작업</li> <li>- 비계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li> <li>- 건축물의 골조, 교량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5미터이상에 한함)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li> <li>- 콘크리트 공작물(높이가 2미터 이상에 한함)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li> <li>- 전압이 75볼트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li> <li>- 맨홀작업, 산소결핍장소에서 작업</li> <li>- 기타 시행령 제11조제1항 별표 2의 안전담당자 지정작업</li> </ul> <p>※ 안전담당자의 업무수당의 인건비는</p>	안전 관리비 총액의 40% 이하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해설)

개 정 전			개 정 후	
항 목	사 용 내 역	사용기준	사 용 내 역	사용기준
			제외 ○ 안전보조원(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을 겸함)의 인건비 ※ 경비원, 청소원, 폐자재처리원의 인건비는 제외한다.	
2. 안전 시설비 등(공사설계내역서 및 건설공사 품셈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제외)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 - 표준안전난간 - 추락방지용 방망 - 안전대걸이용 로우프 - 개구부 덮개 - 추락위험장소 접근방지책 등 ○ 낙하, 비래물 보호용 시설비 - 방호선반 - 낙하물방지망 - 경사법면 보호망(덮개) - 암석방호세트 등 낙하 및 비래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시설 ○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출입금지판, 접근금지판, 현수막, 안전표어(포스터), 안전담, 무재해기록판, 안전수칙판, 각종 안전입간판 및 표지표찰, 안전완장, 안전스티커, 안전깃발, 신호용 렌턴(신호등), 차량유도등 및 위험경보기 등의 경보설비 ○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 - 방진설비, 방음설비 -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 - 긴급대피 방송 등 근로자의 위생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 ○ 안전감시용 케이블 TV 등에 소	안전관리비 총액의 40% 이하	○ 추락방지용 안전 시설비 - 표준 안전 난간 - 추락방지용 방망 - 안전대 걸이용 로우프 - 개구부 덮개 - 위험부위 보호덮개 - 현장내 개구부, 맨홀 등에 설치하는 안전웬스, 가설울타리 등 ※ 외부인 출입금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는 제외 - 추락위험장소 접근방지방책 등 ※ 외부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제외 ○ 낙하, 비래물 보호용 시설비 - 방호선반 - 낙하물 방지망 - 경사법면 보호망(덮개) - 암석방호세트 등 낙하 및 비래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시설 ○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출입금지판, 접근금지판, 현수막, 안전표어(포스터), 안전담, 무재해기록판, 안전수칙판, 안전완장, 안전스티커, 안전깃발, 신호용 렌턴(신호등), 차량유도등 - 야간작업시 전자신호봉 및 경광등 - 기타 각종 산업안전입간판 및 산업안전표지 표찰 ○ 공사현장내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웬스 등 교통안전	안전관리비 총액의 50% 이하

개 정 전			개 정 후	
항 목	사 용 내 역	사용기준	사 용 내 역	사용기준
	<p>요되는 비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안전장치의 구입·수리에 필요한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울리기, 승강기 등의 비상정지장치</li> <li>-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테릭 등의 권과방지장치</li> <li>- 크레인, 승강기, 곤도라, 리프트 등의 과부하방지장치</li> <li>- 목재가공용 등근톱의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 예방장치</li> <li>- 동력식 수동대패의 칼날접촉 예방장치</li> <li>- 연삭기의 덮개</li> <li>- 프레스·전단기의 방호장치</li> <li>-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용접장치의 안전기</li> <li>- 교류아아크 용접기의 자동전격 방지기</li> </ul> </li> <li>○ 가설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접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li> <li>○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비용</li> <li>○ 기타 법령 또는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li> </ul>		<p>시설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 확·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제외</li> <li>○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진설비, 방음설비</li> <li>-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li> <li>- 긴급대피 방송 등 근로자의 위생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li> </ul> </li> <li>○ 안전감시용 케이블 TV 등에 소요되는 비용</li> <li>○ 각종 안전장치의 구입·수리에 필요한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울리기, 승강기 등의 비상정지장치</li> <li>-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테릭 등의 권과방지장치</li> <li>- 크레인, 승강기, 곤도라, 리프트 등의 과부하방지 장치</li> <li>- 목재가공용 등근톱의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예방장치</li> <li>- 동력식 수동대패의 칼날접촉예방장치</li> <li>- 연삭기의 덮개</li> <li>- 프레스·전단기의 방호장치</li> <li>-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용접장치의 안전기</li> <li>- 교류아아크 용접기의 자동전격 방지기</li> <li>- 산소용접기에 부착하는 역화방지기</li> </ul> </li> <li>○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시 교체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비용은 제외</li> </ul> </li> <li>○ 고압가스, 산소용기 등 위험물 방호시설 또는 저장소</li> <li>○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개인장구 보관시설</li> <li>○ 가설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접지시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설전기설비, 분전반, 고압전선 보호관, 전신주이설비 등은 제외</li> </ul> </li> </ul>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예설)

개 정 전			개 정 후	
항 목	사 용 내 역	사용기준	사 용 내 역	사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화기 등 소화설비 및 방화사 등 화재에 방지설</li> <li>○ 가설사무실, 숙소 등에 설치하는 누전·화재경보기</li> <li>○ 철근, 파이프, 크래프 등 돌출부에 절림방지를 위한 캡 등 시설</li> <li>○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비용</li> <li>○ 안전시설 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비용</li> <li>○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위험기계기구 검사후 개선에 필요한 비용</li> <li>○ 기타 법령 또는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li> </ul>	
3. 개인 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보안경, 보안면, 용접용 앞치마 등 안전보호구</li> <li>-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귀마개, 귀덮개, 방진장갑, 송기마스크, 면마스크, 산소호흡기, 공기호흡기, 차광보안경 등 위생보호구</li> <li>- 신호수용반사조끼, 용접용토시(자켓), 수상작업자용 구명용품 등</li> </ul> </li> </ul>	안전관리비 총액의 2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보안경, 보안면, 용접용 앞치마 등 안전보호구</li> <li>-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귀마개, 귀덮개, 방진장갑, 송기마스크, 면마스크, 산소호흡기, 공기호흡기, 차광보안경 등 위생보호구</li> <li>- 용접용토시(자켓),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또는 특정유니폼), 신호수용 반사조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근로자 작업복은 제외</li> </ul> </li> <li>- 해상·수상공사에서 구명조끼, 튜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시선, 구명정 등은 제외</li> </ul> </li> </ul> </li> <li>○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 카메라</li> <li>○ 절연장화, 절연장갑, 방전고무장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장갑, 코팅장갑은 제외</li> </ul> </li> <li>○ 철판, 철타작업용 고무바닥 특수화</li> <li>○ 우의, 터널작업·콘크리트타설 등 습지장소의 장화, 조임대(각반)</li> </ul>	안전관리비 총액의 30% 이하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장의 안전 또는 보건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49조에 의한 진단기관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장의 안전 또는 보건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49조에 의한 진단기관에서 받는</li> </ul> </li> </ul>	

개 정 전			개 정 후		
항 목	사 용 내 역	사용기준	사 용 내 역	사용기준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p>서 받는 안전보건 진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의 작성,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li> <li>○ 분진, 소음 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li> <li>○ 각종 가스탐지기, 산소농도측정기를 유해작업장 환경측정장비에 소요되는 장비</li> <li>○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크레인·리프트등 기계·기구의 완성검사·정기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비용에 한함)</li> <li>○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크레인·리프트등 기계·기구의 자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li> </ul>	<p>안전 관리비 총액의 20% 이하</p>	<p>안전보건진단(자율적으로 받는 경우를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 안전전문가 초빙 안전보건진단</li> <li>※ 타법 적용사항 제외(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li> <li>○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작성,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li> <li>○ 분진, 소음 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 환경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소농도측정기</li> <li>- 환선근접작업경보기</li> <li>- 가스자동측정기(휴대용에 한함)</li> <li>- 일산화탄소 측정기 등 각종 가스탐지기</li> <li>- 조도계, 누전측정기 등</li> <li>- 기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li> </ul> </li> <li>※ 매설물 탐지, 계측, 지하수 개발, 지질 조사, 구조안전검토비용은 제외</li> <li>○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크레인·리프트 등 기계·기구의 완성검사·정기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li> <li>○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크레인·리프트 등 기계·기구의 자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li> <li>○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 유지비(차량구입비 제외)</li> <li>○ 안전경영 진단비용 및 협력업체 안전관리 진단 비용</li> </ul>	<p>안전 관리비 총액의 30% 이하</p>	
5. 안전보건 및 교육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및 보수</li> </ul> </li> <li>○ 안전보건관리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및 보수</li> </ul> </li> <li>○ 사내자체 안전보건교육</li> </ul>	<p>안전 관리비 총액의 20% 이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및 보수</li> </ul> </li> <li>○ 안전관리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및 보수</li> </ul> </li> <li>○ 사내자체안전보건교육</li> </ul>	<p>안전 관리비 총액의 30% 이하</p>	

개 정 전			개 정 후		
항 목	사 용 내 역	사용기준	사 용 내 역	사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감독자정기교육</li> <li>- 근로자정기교육</li> <li>- 신규채용시교육</li> <li>- 특별안전교육(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li> <li>- 작업내용변경시 교육</li> <li>○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 검사원 양성 교육</li> <li>○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교육 기관에서 자격, 면허취득 또는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li> <li>- 철골구조물 및 배관 등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업무</li> <li>- 타워크레인 조종업무(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함)</li> <li>-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li> <li>- 거푸집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li> <li>- 비계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li> <li>- 고압선 정전 및 활선작업</li> <li>- 기타 법 제47조에서 규정한 작업</li> <li>○ 교육교재, 교육용팜프렛, 슬라이드, 영화, VTR 등 기자재 및 초빙강사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li> <li>○ 근로자의 안전보건증진을 위한 교육, 세미나, 견학, 시찰 등에 소요되는 비용</li> <li>○ 안전보건행사비(년 2회이하), 포상비, 각종 서식비등 사업장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감독자정기교육</li> <li>- 근로자정기교육</li> <li>- 신규채용시교육</li> <li>- 특별안전교육(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li> <li>-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li> <li>○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원 양성 교육</li> <li>○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에서 자격, 면허취득 또는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li> <li>- 철골구조물 및 배관 등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업무</li> <li>- 타워크레인 조종업무(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함)</li> <li>-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li> <li>- 거푸집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li> <li>- 비계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li> <li>- 고압선 정전 및 활선작업</li> <li>- 기타 법 제47조에서 규정한 작업</li> <li>○ 교육교재, 교육용 팜프렛, 슬라이드, 영화 VTR 등 기자재 및 초빙강사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li> <li>○ 근로자의 안전보건증진을 위한 교육, 세미나, 국내견학, 시찰 등에 소요되는 비용</li> <li>○ 안전관계자의 해외견학·연수비</li> <li>○ 현장내 안전교육시 음료수 비용</li> <li>○ 현장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li> <li>○ 안전교육장 책·결상, 교육용 비품 및 장비</li> <li>○ 안전교육장내 냉·난방 설비 및 유지비 ※ 교육장외의 냉난방 제외</li> <li>○ 안전관계자 직무교육 및 기타 교육 참석시 교육비등 출장비(견학포함)</li> <li>○ 안전보건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 자료수집</li> </ul>		

개 정 전			개 정 후	
항 목	사 용 내 역	사용기준	사 용 내 역	사용기준
			등에 사용되는 비용 ○ 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년 2회 이하) ※ 기공식, 준공식 등 무재해기원과 관계 없는 행사 제외 ○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 무재해 선포식, 무재해 경연, 무재해 달성 경축 - 산업안전강조기간 행사 등 ※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 제외 ○ 안전보건 행사장 설치 및 포상비 ○ 사진 및 인화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각종 서식비 등 기타 사업장 안전교육 또는 안전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6. 근로자의 건강진단비 등	○ 구급기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근로자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주) 1. 다음과 같은 사항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 경비원, 교통정리원(도로확·포장, 철도보수공사 등), 자체정리 및 폐자재 처리원, 청소원, 안전담당자 업무수당의 인건비 - 가설올타리, 외부비계, 급수시설, 지하수개발, 세면·샤워시설, 간이용장실, 냉온방시설 및 부대비용, 안전보건이외의 용도로 적용되는 사항(무선통신, 안전차량, 구명선 등),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비용 - 사용근기가 타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세륜시설 등) - 작업복, 우의, 면장갑, 코팅장갑, 안전보건 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 병원·의원 등에 지불하는 진료비, 방역비, 방충비 등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기준의 합계는 150%이하이나 이를 사업장 특성에 따라 항목별로 조정하여 100%를 사용하라는 것이며, 해당 항목별로 제한된 사용기준 이상을 초과할 수는 없음	안전관리비 총액의 10% 이하	○ 구급기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일반 및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 일반건강진단 중 의료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비용 제외 ○ 신규채용시 신체검사비 ○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 ※ 이동화장실, 급수, 세면, 샤워시설, 병·의원 등에 지불하는 진료비는 제외	안전관리비 총액의 10% 이하
7. 건설재해 예방기술지도비	신 설 (1항에서 7항으로 이동)		○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공사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 한함) 1.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기준의 합계는 210% 이하이나 이를 사업장 특성에 따라 항목별로 조정하여 100%를 사용하라는 것이며, 해당 항목별로 제한된 사용기준 이상을 초과할 수는 없음	안전관리비 총액의 최고 20% 이하



개 정 전						개 정 후					
<b>&lt;별표 3&gt;</b>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b>&lt;별표 3&gt;</b>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공정율	20%	40%	60%	80%	100%	공정율	20%	40%	60%	80%	100%
사용 기준	20% 이상	40% 이상	60% 이상	80% 이상	100% 이상	사용 기준	20% 이상	40% 이상	60% 이상	80% 이상	100% 이상
주 : 공정율은 기성공정율을 기준으로 하되 그 중간값은 직선보간법에 의한다.						주 : 공정율은 기성공정율을 기준으로 하되 그 중간값은 직선보간법에 의한다.					
<b>&lt;별표 4&gt;</b> 기술지도 수수료 기준						<b>&lt;별표 4&gt;</b> 기술지도 수수료 요율표(안전관리비총액 대비)					
기술지도구분	수 수 료						수수료 요율(%)	지도횟수기준			
정기기술지도	안전관리비 총액의 10% 이하										
전담기술지도	안전관리비 총액의 15% 이하										
※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는 5%이내의 범위에서 증가시킬 수 있음											
						3억원미만	15.0	6			
						3 ~ 5억원미만	14.0	7			
						5 ~ 10억원미만	7.4	8			
						10~15억원미만	7.2	9			
						15~20억원미만	7.0	10			
						20~30억원미만	6.8	11			
						30~40억원미만	6.6	12			
						40~50억원미만	6.4	15			
						50~60억원미만	6.2	17			
						60~70억원미만	6.0	19			
						70~80억원미만	5.8	20			
						80~90억원미만	5.5	21			
						90~100억원미만	5.0	22			
※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는 5%이내의 범위에서 증가시킬 수 있음						※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는 5%이내의 범위에서 증가시킬 수 있음					

### 3.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기준 해설

- 1) 1항 안전보건 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 ① 안전보건 관계자의 인건비외 안전관리자 출장비를 추가하였음
  - ② 하도급업체의 안전관리자 인건비 추가
  - ③ 20억미만 공사의 경우 유자격자로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할 시의 인건비 추가
  - ④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에 덤프 트럭, 이동식 크레인, 콘크리트 펌프카 등 종전 적용상의 견해차가 없도록 명확하게 하였으며 기타 공사장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자를 추가하였으며, 특히 안전관리자 보조원의 인건비를 추가하였음
- 2) 2항 안전시설비 등(공사설계내역서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제외)
  - ① 추락 방지용 안전시설비 중 현장내 개구부 맨홀 등에 설치하는 안전웬스, 가설 울타리를 추가하였음. 여기서 안전웬스, 가설울타리는 반드시 현장에 개구부나 맨홀 등에 한정된 것으로 현장 외가에 설치되는 가설 울타리는 제외되며 손로 개념으로 정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손로는 표준품셈 참조)
  - ②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야간작업시 전자신호봉, 또는 경광등에 대한 비용을 추가 하였음
  - ③ 공사 현장내에서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웬스 등 교통 안전 시설물을 추가하였음. 여기서 공사 현장내라는 것에 유의하여야 함
  - ④ 가설 사무실, 숙소 등에 설치하는 누전, 화재경보기 비용 추가
  - ⑤ 철근, 파이프, 크래프 등 돌출부에 찰림방지를 위한 캡 등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이 추가 되었음
  - ⑥ 안전시설 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비용이 추가되었음. 여기서 유의할 사항은 안전시설 중 가설울타리(현장내 개구부 맨홀 등에 설치), 웬스 등 설치, 철거비용이 포함될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하여 적용바람
  - ⑦ 안전보건 진단, 작업환경 측정, 위험기계기구 검사 후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하였음
- 3) 개인 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 ① 각종 개인 보호구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중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 구입 비용이 추가되었으며 일반 근로자의 작업복은 제외하고 있으니 유의하기 바람
  - ② 해상, 수상 공사에서 구명조끼, 튜브의 비용이 추가되었음
  - ③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 카메라 비용이 추가되었음. 여기서도 안전관리자 전용이라는 조건이 있으니 유의하기 바람
  - ④ 절연장화, 절연장갑, 방전고무장갑 비용이 추가되었음
  - ⑤ 철골, 철탑 작업용 고무바닥 특수화 비용이 추가되었음
  - ⑥ 우의, 터널작업, 콘크리트 타설 등 습지장소의 장화, 조임대(각반)비용이 추가되었음
- 4) 사업장의 안전 진단비 등
  - ① 사업장의 안전 또는 보건 진단비는 변경전에는 법 제49조에 의한 진단기관에서 받는 안전

보건 진단으로 국한되었으나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안전진단을 받고자 할 때 법 제49조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받는 안전보건 진단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다만 타법에 의한 안전진단, 즉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전기안전 대행 수수료 등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규칙 제126조 대상 사업장의 종류 참조). 여기서 구조안전 검토비는 제외하고 있으니 착오없기 바람

- ② 분진, 소음 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중 활성작업 경보기, 가스자동 측정기, 일산화탄소 측정기 등 각종 가스 탐지기 비용이 추가되고 조도계, 누전 측정기 등에 필요한 비용이 추가되었음. 여기서 매설물 탐지, 계측, 지하수 개발, 지질 조사 등의 비용은 제외하고 있음
- ③ 안전관리용 안전순찰 차량유지비를 추가하되 차량 구입비는 제외하고 있으니 유의하기 바람
- ④ 안전경영 진단비용 및 협력업체 안전관리 진단비용은 추가하고 있음. 여기서 안전경영 진단은 「기업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제도(예규 제313호)」에 의한 안전경영 진단을 말함(규칙 제198호, '96. 9. 20 참조)

5)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

- ① 안전 관계자의 해외견학, 연수비 추가
- ② 현장내 안전보건 교육장 설치비용 추가
- ③ 안전교육장 책걸상, 교육용 비품 장비 추가
- ④ 안전교육장 냉·난방 설비 및 유지비 추가
- ※ ② ③ ④는 안전교육장 설치 비용으로 세가지가 모두 갖추어져야 안전교육장으로 되므로 교육장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시설 일체가 구비되어야 교육장으로 인정이 되며 가설사무실 개념(표준품셈 적용)으로 비용이 계상되어야 할 것이다.
- ⑤ 안전관계자 직무교육 및 기타 교육 참석시 교통비 등 출장비를 지불할 수 있도록 추가되었으며 견학 때도 출장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⑥ 안전보건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 자료 수집 등에 사용되는 비용 추가
- ⑦ 안전 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년 2회이하). 이는 종전 행사비에서 분리하여 그동안 적용상의 문제점을 해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
- ⑧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 (가)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 (나) 무재해 선포식, 무재해경연, 무재해 달성 경축
  - (다) 산업안전 강조기간 행사 등

이상의 비용내역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전보건의식 고취 명목의 회식비는 제외하고 있으니 유념하기 바람

- ⑨ 행사장 설치 및 포상비
- ⑩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진 및 인화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추가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여기서는 근로자의 건강진단비 등을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으로 개정하여 사용 내역을 추가 하였다.

- ① 일반 및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하면서 의료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비용은 제외되어야 함(일반건강진단 등)
  - ② 신규 채용시 신체검사비 추가
  - ③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추가
  - ④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 추가
- ※ 방충, 방역비는 종전까지는 비용으로 지불될 수 없으나 개정된 규정에는 포함되었다. 단 이동 화장실, 급수, 세면, 샤워시설, 병·의원 등에 지불하는 진료비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의하기 바람

7)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에 지불하는 기술지도비는 종전에는 1항 안전관리자 인건비에서 지불도 록 되어 있으나 이것을 7항으로 신설하여 안전관리비 총액의 20% 이하로 사용하도록 규정하 고 있음

4. 사용기준의 변경

개 정 전		개 정 후	
항 목	사용기준	항 목	사용기준
1항	40%	1항	40%
2항	40%	2항	50%
3항	20%	3항	30%
4항	20%	4항	30%
5항	20%	5항	30%
6항	10%	6항	10%
7항	-	7항	20%
계	150%	계	210%

[별지 제1호 서식] (개정후)

별지 제1호 서식은 개정전에 비해 '7.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항목이 추가되었음.

(앞면)

표준안전 관리비 사용내역서

건설업체명		공 사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공사금액	원	공 사 기 간	~
발 주 자		누계공정율	%
계 상 된 안전관리비	원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 금액	원 (안전관리비×공정율)
사 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1. 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진단비 등			
7.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 10조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내역을 제출합니다.

19    년    월    일

제출자            직책            성명            (인)

항 목 별 사 용 내 역

항 목	사 용 일 자	사 용 내 역	금 액
1. 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진단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주 : 사용내역은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대로 작성